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2
----------	-----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 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3. 6. 1.
4.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 27.)
    - 승인

## Ⅱ. 제안설명의 요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 1.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 5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7,930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961억 2천 4백만원 대비 1조 3,969억원이 증가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 수입은 총 1,185억 9천 4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8억 1백만원, 예치금회수 757억 7천 8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0억 1천 5백만원이고,
  - 지출은 총 1,008억 7천 7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34억 2천 5백만원, 예치금으로 974억 5천 2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77억 1천 8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 중지 및 공사용역 등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51억 6천 9백만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 수입은 총 29억 7천 2백만원으로, 이자수입 3천 6백만원, 예치금회수 19억 3천 6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고,
- 지출은 총 29억 7천 2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기관운영에 1억 3천 9백만원, 예치금 28억 3천 3백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천 3백만원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 수입은 총 1조 2,897억 9천 1백만원으로, 이자수입 35억 3천 8백만원, 예치금회수 3,184억 1천 1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78억 4천 2백만원이고,
- 지출은 총 1조 1,526억 8천 2백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관운영에 802억 8천 7백만원, 예치금 1조 723억 9천 5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371억 9백만원으로, 학사 일정에 따른 겨울방학 중 공사시행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095억 4백만원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 수입은 총 10억 6백만원으로, 이자수입 6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고,

- 지출은 총 10억 6백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억 8천 8백만원, 예치금 4억 1천 8백만원이며,
-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억 1천 8백만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 수입은 총 4,651억원으로,  
이자수입 3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20억원이고,
- 지출은 총 4,651억원으로, 예치금은 4,651억원이며,
-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651억원으로, 2022년에 최초로 조성하였음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 1. 제안경위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관련 법령은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금번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 6개 기금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제출한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151억 6,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757억 7,700만원) 보다 52.0%, 393억 9,100만원 증가한 것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회계연도에 운용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8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19억 3,500만원) 보다 46.4%, 8억 9,700만원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조 2,095억 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3,184억 1,100만원)보다 279.9%, 8,910억 9,300만원 증가한 것이며,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1년 12월 신설된 것으로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억 1,700만원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2년 8월 신설된 것으로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650억 9,900만원임

〈표 3-1〉 기금별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액 (F=E-A)	증감률 (F / A)
			계 (B=C-D)	수입액 (C)	지출액 (D)			
통합기금 <sup>주1)</sup>		-	465,099	465,099	-	465,099	465,099	순증
생태기금 <sup>주2)</sup>		-	417	1,006	588	417	417	순증
남북기금 <sup>주3)</sup>		1,935	897	1,036	138	2,833	897	46.3
시설기금 <sup>주4)</sup>		318,411	891,093	971,380	80,286	1,209,504	891,093	279.9
건립기금 <sup>주5)</sup>		75,777	39,391	42,816	3,424	115,169	39,391	52.0

- ※ 주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주2)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 주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3. 3.10 폐지)
- 주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주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3. 기금 결산 관련 검토

#### (1) 기금 조성 총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 중 '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가.

〈표 3-2〉 기금별 설치근거 및 기금운용개시 현황

기 금 명	설 치 근 거	기 금 운 용 개 시 연 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 제출된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하면 5개의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151억 6,900만원으로,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757억 7,700만원) 보다 52.0%, 393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8억 3,300만원으로,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19억 3,500만원) 보다 46.4%, 8억 9,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095억 400만원으로, '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3,184억 1,100만원) 보다 279.9%, 8,910억 9,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동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억 1,700만원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전화기금**의 경우, '22년 8월, 서울시의회가 동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함에 따라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650억 9,900만원(예치금)으로 제출됨

## (2)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검토

###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2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1,046억 5,900만원이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세 차례 변경함에 따라 수입계획액도 당초보다 139억 3,500만원 증가한 1,185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실제수납액도 1,185억 9,4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 **전입금**은 당초 261억 6,9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보통교부금 증액과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계약 일정, 금액 변동 및 추가 매각 등으로 148억 4,500만원이 증액된 410억 1,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수입계획 현액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회계연도말 예치금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과목으로 당초 778억 7,8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21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1억 100만원을 감액한 757억 7,700만원으로 변경하여 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6억 1,1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나,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과 연도말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1억 8,900만원 증액한 18억 1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지난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된 신청 사건립 17억 7,600만원을 '22회계연도 수입계획현액에 포함한 것이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0원으로 제출한 바,

- 지난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비 17억 7,600만원은 **전년도이월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 하여야 하나, '22회계연도 결산에는 수입항목중 **예치금 회수**로 부적정 처리한 것으로
- 결산결과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여유재원인 예치금으로 산입시키는 것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항목에서 발생된 이월액까지 여유재원으로 인식하여 지난회계연도로 부터 이월된 수입 17억 7,600만원을 **전년도이월금**이 아닌 **예치금회수**로 징수하고 수납처리 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운용부서가 관련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입항목에는 수입계획현액과 수납액간 △17억 7,600만원이 감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수입결산과 연동된 지출결산의 경우에도 17억 7,600만원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결산결과를 제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3〉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 년 도 이 월 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104,659	118,594	13,935	1,776	120,370	118,594	△1,776
전 입 금	26,169	41,015	14,845	-	41,015	41,015	-
전 년 도 이 월 금	-	-	-	1,776	1,776	-	△1,776
예 치 금 회 수	77,878	75,777	△2,101	-	75,777	75,777	-
이 자 수 입	611	1,801	1,189	-	1,801	1,801	-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당초 1,046억 5,9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139억 3,500만원 증액한 1,185억 9,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1,008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77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함
-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429억 3,1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관급자재 파동 및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2회계연도 지출계획을 △228억 8,100만원 감액한 200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고, 3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77억 1,700만원은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연수원 건립사업**은 당초 5,000만원을 설계비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22년 12월, 지출계획액 전액을 감액조정 하였음
- **예치금**은 당초 616억 7,800만원으로 지출계획였으나, 결산결과 974억 5,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여유재원으로 974억 5,1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2회계연도 결산결과 10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검토됨
  -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수입항목중 **전년도이월금과 예치금회수**를 부적정 수납처리함에 따라 지출항목에 연동되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 17억 7,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수입 및 지출항목에 대한 부적정처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시의회에 제출된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는 금융기관에 여유재원을 예치한 이후에도 10억 9,100만원이 예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상식밖의 결산결과를 제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는 물론 기금운영부서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4〉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수 (A)	정					
계	104,659	118,594	1,776	120,370	100,876	17,717	1,776
신청사건립	42,931	20,050	1,776	21,826	3,424	17,717	685
설계비	13	-	-	-	-	-	-
시설비	41,078	20,003	500	20,503	2,785	17,717	1
감리비	1,638	-	1,276	1,276	591	-	684
시설부대비	200	47	-	47	47	-	-
연수원건립	50	-	-	-	-	-	-
설계비	50	-	-	-	-	-	-
예치금	61,678	98,543	-	98,543	97,451	-	1,091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2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29억 3,300만원이나 수입계획을 3,800만원 증액한 29억 7,100만원으로 변경하여, 29억 7,1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전입금은 당초 수입계획액 10억원이 계획대로 실수납 되었고, 예치금회수는 19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자수입은 당초 1,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 에 따른 이자수입과 연도말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5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5〉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

나.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2,933	2,971	38	-	2,971	2,971	-
전 입 금	1,000	1,000	0	-	1,000	1,000	-
예 치 금 회 수	1,922	1,935	13	-	1,935	1,935	-
이 자 수 입	11	36	25	-	36	36	-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2회계연도 당초 지출계획액은 29억 3,300만원이었으나, ①사업비 감액 및 예치금 증액('22년 10월) ②예금이자 수입 반영 및 집행잔액 예치금 지출 처리('22년 12월)를 사유로 회계연도 중 두 차례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경우, 당초 9억 3,3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남북관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7억 9,700만원 감액된 1억 3,600만원 (①통일교육주간 활성화 지원 8,300만원, ②평화지킴이 3,800만원, ③통일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연수 1,200만원, ④남북교육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은 당초 19억 9,7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결산시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처리하도록 정함에 따라 8억 3,600만원 증가된 28억 3,300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제출됨

〈표 3-6〉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수정 (A)						
계	2,933	2,971	-	2,971	2,971	-	-
남북교육 협력기금	933	136	-	136	136	-	-
운영비	679	136	-	136	136	-	-
업무추진비	4	-	-	-	-	-	-
민간이전	250	-	-	-	-	-	-
인원회 운영	2	1	-	1	1	-	-
운영비	2	1	-	1	1	-	-
예치금	1,997	2,833	-	2,833	2,833	-	-

#### 다. 기금의 존속 및 폐지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도에 설치되었으나, 동 조례가 '23년 3월 10일 폐지된 바,

○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23년 4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폐지하고, '22 회계연도말 조성된 28억 3,300만원과 이자수입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세입조치 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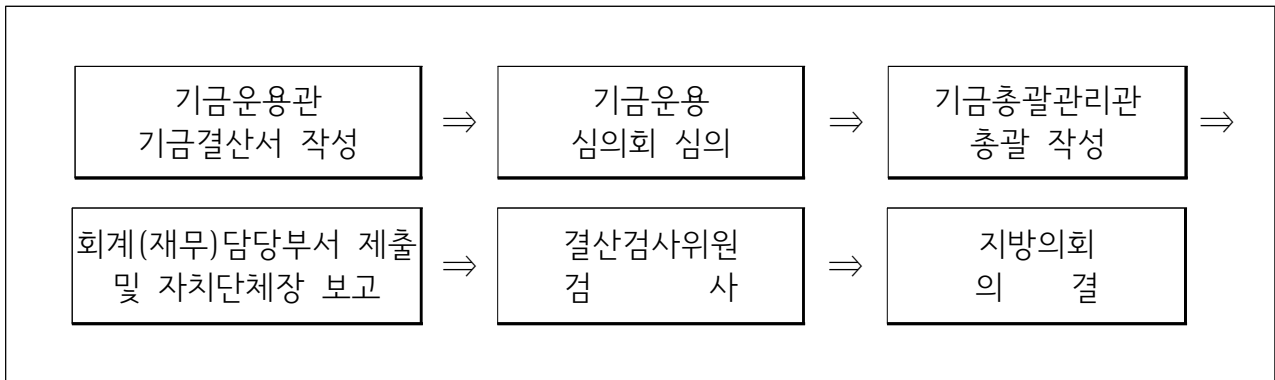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계	원금	이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864,641,430	2,833,092,480	31,548,9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6538 ('23. 4. 3)

- 동 기금은 '23년 3월,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3년 4월, 기금운용도 폐지하였으나, '22회계연도에 대한 기금결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검사이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기금결산 승인절차〉



- 그러나 동 기금의 경우, '22회계연도에 대한 기금결산서를 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가 예규(제171호)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예치금을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지난 '12회계연도까지 운용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과 경과조치까지 명시한 사례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폐지시 재원이전에 대한 경로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3,207억 6,7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1조 2,897억 9,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 현액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전입금**은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22년 8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678억 4,1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전액을 수입 처리한 것으로 제출됨
-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23억 5,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과 연도말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1억 8,200만원 증가된 35억 3,800만원 이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320,767	1,289,791	969,023	-	1,289,791	1,289,791	-
전 입 금	-	967,841	967,841	-	967,841	967,841	-
예 치 금 회 수	318,411	318,411	-	-	318,411	318,411	-
이 자 수 입	2,356	3,538	1,182	-	3,538	3,538	-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2회계연도 지출계획액은 당초 3,207억 6,700만원 이었으나, '22년 8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조 2,897억 9,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1조 1,526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71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함
- **안전관리(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2,819억 2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 802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371억 800만원을 학사일정 및 공사완료 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이월하였음
- **예치금**은 당초 890억 6,2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22년 8월, 예치금을 1조 74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이후, '22년 12월, 이자수입 증가분(4억 7,300만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1조 78억 8,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지출계획된 예치금(1조 78억 8,600만원)보다 6.4%, 645억 800만원 증가된 1조 723억 9,500만원이 실제 예치된 것으로 제출한 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취지에서 결산결과 발생한 계획과 집행간의 차이를 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결과적으로는 예치금에 합산하도록 한 것으로
  -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의 집행잔액 645억 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합산하여 예치금은 지출계획보다 초과 예치(645억 700만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도 이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수	정수 (A)					
계	320,767	1,289,791	-	1,289,791	1,152,682	137,108	-
안전관리 (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	231,702	281,902	-	281,902	80,286	137,108	64,507
건설비	231,702	281,902	-	281,902	80,286	137,108	64,507
위원회운영	2	2	-	2	1	-	1
운영비	2	2	-	2	1	-	1
예치금	89,062	1,007,886	-	1,007,886	1,072,395	-	△64,508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결산의 승인절차를 ①기금결산서 작성, ②기금운용심의회 심의, ③결산검사위원 검사, ④지방의회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고유목적사업의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는 등의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결의)를 결산검사('23. 4.11~5.15)가 진행중인 '23년 4월24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가 기금결산을 심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는 결산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안전부가 예규로 정한 사안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①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외에도 ②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③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에도 결산검사('23. 4.11~5.15) 기간 혹은

결산검사이후 기금결산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0〉 기금결산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현황

기	금	명	심 의 일 자	심 의 결 과											
신	청	사	및	연	수	원	건	립	기	금	'23. 5.23	원	안	가	결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23. 4.24	원	안	가	결	
생	태	전	환	교	육	기	금	'23. 2. 6	원	안	가	결			
통	합	교	육	재	정	안	정	화	기	금	'23. 5.19	원	안	가	결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2333 ('23. 5.25)

####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10억 6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1〉 생태전환교육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1,006	1,006	-	-	1,006	1,006	-		
전	입	금	1,000	1,000	-	-	1,000	1,000	-	
이	자	수	입	6	6	-	-	6	6	-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지출계획액은 10억 600만원으로 기금 결산의 경우에도 당초 지출계획액과 변동 없음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농촌유학지원금으로, 당초 운영계획 수립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정한 바,
    -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지출원인행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또한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여 '22년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2년 2월, 교육부 질의 회신 이후 '22년 3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22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부서가 조례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22년 3월)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21년 8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신설되었고, 교육부도 이에 대한 의견 조

회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 기금운용부서가 예산편성기준을 숙지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에 타 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2〉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 지출 계획액		전 년 도 이 월 액 (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F=C-D-E)
	당 초	수 정 (A)					
계	1,006	1,006	-	1,006	1,006	-	-
생 태 전 환 교 육 기 금	501	590	-	590	588	-	2
운 영 비	1	1	-	1	1	-	-
전 출 금 등	500	-	-	-	-	-	-
자 치 단 체 등 이 전	-	589	-	589	587	-	2
예 치 금	504	415	-	415	417	-	△2

###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가.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2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4,648억 1,900만원이나 최종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반영한 4,650억 9,90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입금 4,620억원과 이자수입 30억 9,900만원 전액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3〉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계	464,819	465,099	280	-	465,099	465,099	-
전 입 금	462,000	462,000	-	-	462,000	462,000	-
이 자 수 입	2,819	3,099	280	-	3,099	3,099	-

## 나.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최종 계획금액인 4,650억 9,900만원 전액 예치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행잔액 (F=C-D-E)
	당 초 (A)	수 정 (A)					
예 치 금	464,819	465,099	-	465,099	465,099	-	-

### (3)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검토

- 「지방기금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총 5개 기금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5〉 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의회의결)

의 결 일	기 금 명	지 출 계 획 변 경 사 유	의 결 과
제 3 1 1 회 임 시 회 (’22. 8.29)	신청사 및 연수원 건 립 기 금	공유재산 매각 계약일정 및 금액변동과 추가매각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59억 3,300만원 (기관운영관리 △13.8%)주1) 감액 ② 예치금 187억 1,900만원 (재무활동 30.4%) 증액	원 안 가 결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50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1.7%) 증액 ② 예치금 9,183억원 (재무활동 1,031.1%) 증액	수 정 가 결
제 3 1 5 회 정 려 회 (’22.12.16)	남 북 교 육 교 류 협 력 기 금	사업추진 상황 변경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7억 7,6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3.2%) 감액 ② 예치금 7억 9,800만원 (재무활동 40.0%) 증액	원 안 가 결
	신청사 및 연수원 건 립 기 금	라. 금리 상승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① 비용자성사업비 △122억 6,700만원 (기관운영관리 △33.1%) 감액 ② 예치금 132억 9,600만원 (재무활동 16.5%) 증액	원 안 가 결

※ 주1) 괄호( )의 비율은 해당 정책사업의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변경계획액의 비율임

○ 「지방기금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바,
- ’22회계연도에는 6개의 기금이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 ’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든 기금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감의 결재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연도말 최종 이자 수입 반영 및 집행잔액 예치금 지출 처리’를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정책사업인 **기관운영**의 지출계획액을 당초(240만원) 보다  $\Delta 22.9\%$ ,  $\Delta 55$ 만원 감액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결산결과 발생된 계획과 집행간의 차이를 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결과적으로는 예치금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회계연도말 예치금 조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결과일 수 있어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결과적으로는 정책사업 변경액이 소액이라 하여도 정책사업 지출계획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법정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16〉 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의회의결 비대상)

기 금 명	변경일자	지 출 계 획	변 경 사 유	변 경 방 법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2.12.28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집행잔액 예치금 지출처리 ① 비용자성사업비 △47억 2,800만원 (기관운영관리 △19.1%) 감액 ② 예치금 48억 4,900만원 (재무활동 5.2%) 증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3. 1. 6	연도말 최종 지출금액 반영		단체장 결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12.30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집행잔액 예치금 지출처리 ① 비용자성사업비 △2,1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3%) 감액 ② 기본경비 △55만원 (기관운영 △22.9%) 감액 ③ 예치금 48억 4,900만원 (재무활동 5.2%) 증액		단체장 결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2.12.30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단체장 결재
생태전환교육기금	'22. 3. 8	지출 세목 변경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2. 9.27	예치금 사용하여 사업비 추가 편성 ① 비용자성사업비 8,9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 증액 ② 예치금 △8,900만원 (재무활동 △17.7%) 감액		"
	'22.12.30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2.12.29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단체장 결재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3. 6. 27.)**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922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⑤=①+②
		소계②=③-④	조성액③	사용액④	
합계	396,123,948,540	1,396,900,511,835	1,481,338,776,445	84,438,264,610	1,793,024,460,37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75,777,478,890	39,391,928,410	42,816,606,430	3,424,678,020	115,169,407,30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935,469,650	897,622,830	1,036,046,090	138,423,260	2,833,092,48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18,411,000,000	891,093,428,685	971,380,048,015	80,286,619,330	1,209,504,428,68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0	417,685,370	1,006,229,370	588,544,000	417,685,370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0	465,099,846,540	465,099,846,540	0	465,099,846,540

## 3.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